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세원관리과

제정 2008· 6· 12 조례 제 713호
 일부개정 2011· 1· 11 조례 제 883호
 전부개정 2013· 3· 11 조례 제 971호
 일부개정 2014· 8· 8 조례 제1043호
 일부개정 2018· 5· 18 조례 제1393호
 일부개정 2022· 4· 22 조례 제1824호
 일부개정 2026· 4· 17 조례 제23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이천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8, 2018· 5· 18, 2022· 4· 22>

1. “금고”란 이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

사를 합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이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정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18>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8>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22·4·2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18>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제목개정 2014·8·8]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5·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8·5·18, 개정 2022·4·22>

1. 이천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신분은 심의종료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2·4·22>

제8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다. <개정 2018·5·18>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8>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8>
-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본조신설 2018·5·18]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5·18, 2026·4·17>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8>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

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4·22>

제13조(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8>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8>

제14조(금고약정의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2018·5·18>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개정 2018·5·18, 2022·4·22>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③ 시장은 금고약정이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

[제목개정 2022·4·22, 2026·4·17]

제15조(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5·18>

제16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 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제1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6·4·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8·8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8 조례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4·22 조례 제1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6·4·17 조례 제2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그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26. 4. 17>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	4
	- 국내평가기관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6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8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2] <개정 2026. 4. 17>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5 (시와의 협력 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다)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만점 처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 시민이 금융거래 및 지방세입금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영업점)의 수 등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2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및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보안인증결과 등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인력배치 등 포함)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특정사업 등에 대한 협력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현금출연만 인정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